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5. 18 선고 2022가단15019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환철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신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태영

변 론 종 결 2023. 4. 13.

판 결 선 고 2023. 5. 18.

주 문

1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2,130,634원 및 그 중 4,005,677원에 대하여 2022. 11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피고에 대한 1차 대여금

(1) C 주식회사(이하 'C'라 한다)는 2013. 12. 26. 피고에게 3,000,000원을 이자 연 39%, 대출기간 2년, 연체이자 연 39%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.

(2)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자 C는 2015. 7. 27. D 주식회사(변경 전 상호는 E 주식회사, 이하 'D'라 한다)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, D는 2015. 8. 11.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.

나. 피고에 대한 2차 대여금

(1) F 주식회사(이하 'F'라 한다)는 2014. 12. 3. 피고에게 3,000,000원을 이자 연 34.9%, 대출만기일 2016. 11. 26., 연체이자 연 34.9%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.

(2)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하자 F는 2016. 12. 29. D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, F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를 위임받은 D는 2017. 1. 2.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.

다. 관련 판결의 확정

D는 2019.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367522호로 위 2건의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. 7. 10.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7,777,377원 및 그 중 4,005,677원에 대하여 2019. 6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,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(이하 '선행 판결'이라 한다).

라. 대여금 채권의 양도

D는 2022. 3. 21.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2건의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, D로부터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22. 4. 18.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여 그 무렵 도달하였다.

마. 대여금 채권 원리금

2022. 11. 21.을 기준으로 한 위 2건의 대여금 채권은 원금 4,005,677원, 이자 및 연체이자 8,124,957원 등 합계 12,130,634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)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

원고는 D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2건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2022. 11. 21.까지 미납된 위 2건의 대여원리금 합계 12,130,634원 및 그 중 원금 4,005,677원에 대하여 2022. 11. 22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.

3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
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.

가. 관련 법리

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,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, 그 후소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해서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되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,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5다74764 판결, 대법원 2018. 7. 19.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 확정판결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고(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),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(민법 제165조 제1항, 제178조 제2항).

나. 판단

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, 피고에 대한 2건의 대여금 채권에 대해서는 D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9. 7. 10.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선행 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무렵 그대로

확정되었고, 원고는 그 후 위 2건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선행 판결에 기초하여 피고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(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, 민사집행법 제31조),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청구 내용은 전소인 확정된 선행 판결과 동일하고, 원고가 판결에 의해 확정된 위 2건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경과가 임박해서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하였다는 등 예외적인 사정도 없으므로(오히려 위 2건의 대여금 채권은 선행 판결이 확정된 2019.경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남아 있다),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철환